

# 투자권유준칙

제정일자	2019.06.11
전면개정	2022.10.07
개 정	2025.03.24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주)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 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 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가. 금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금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 제4조 (방문목적 확인)

1.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4. 금소법상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되며,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경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한다.

##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6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

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5. 위 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6.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개정 2025.03.14>

### 제7조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위의 제 1호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 10조 및 10조2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03.14>
3. 임직원은 제 2호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장 투자권유

### 제8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제 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4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5.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4>

### 제9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 1호를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제 1호부터 제 3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 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 제10조 (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및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 지침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03.14>
4.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5.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10조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03.14>

### 제11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1.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 1호에 따른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10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12조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03.14>
    -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 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타.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나.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 권유하여야 한다.

## 제13조 (설명 의무)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나. 임직원 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 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4. 임직원 등은 제 1호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임직원 등은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산·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7.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가. 서면교부
  -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8. 임직원 등은 제1호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제14조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3조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등 제도의 차이
  -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13조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해지 여부, 환해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해지비율, 환해지 대상 통화, 주된 환해지 수단 및 방법
  - 다. 환위험 해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해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해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해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용
  -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해지 여부 및 해지 정도
  -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마. 환위험 해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제15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지 제3호] 및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 지침에 따라 위험등

급을 산정한다.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제 제3호]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5.03.14>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나. 신용등급

다. 상품구조의 복잡성

라.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마. 환매·매매의 용이성

바. 환율의 변동성

사. 그 밖의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 제16조 (계약서류의 교부)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가. 서면교부
  -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3. 회사는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회사는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6조 2 (청약의 철회)**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6조 2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4.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5.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6.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6조 3 (위법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 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2. 투자자가 제1호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4. 회사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7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제18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야.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자.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차.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파.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호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제1호의 각 목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 제19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나.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다.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제20조 (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03.14>

1. 직원 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 등은 제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 4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

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 제21조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19년 6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본 준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채택한 것으로 별도의 인허가(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무는 이를 득한 후 수행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5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투자자정보 확인서 (개인용)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고, 연1회 이상 투자자로부터 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이의 내용에 맞게 투자일임(자문)자산을 운용(자문)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기 바랍니다.

◆ 투자자께서는 회사로부터 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유효기간(24개월)이 경과한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새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신규등록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정보 변경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일반금융소비자) (개인)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전문금융소비자) ( <input type="checkbox"/> 투자자 유형 조사 생략)
--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전문금융소비자)가 투자자 유형 조사 생략을 원할 경우 자기의 투자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기초정보>

PART 1		배점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 ~ 40세 <input type="checkbox"/> 41세 ~ 50세 <input type="checkbox"/> 51세 ~ 60세 <input type="checkbox"/> 61세 이상	
2. 고객님의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은행 예, 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을 수 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을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p>4. 고객님께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p> <p><input type="checkbox"/>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p> <p><input type="checkbox"/>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p> <p><input type="checkbox"/>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p>	
<p>5.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10% 이하</p> <p><input type="checkbox"/> 10% 초과 ~ 20% 이하</p> <p><input type="checkbox"/> 20% 초과 ~ 30% 이하</p> <p><input type="checkbox"/> 30% 초과 ~ 40% 이하</p> <p><input type="checkbox"/> 40% 초과</p>	
<p>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p>	
<p>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p>	

<위험선호도>

PART 2	
<p>8.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  (필요시 판매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p>9.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p> <p><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실현</p> <p><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실현목적</p> <p><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목적</p> <p>※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p>

<기타>

PART 3			
고객님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    년    월)		
본인은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성향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성명	서명/인	날짜	년    월    일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정보 제공여부>(자필기재)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 미 제공
-----------------------------------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제공해야함.

<투자권유 희망여부>(자필기재)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권유를 받아야함.



<별지 제1호>

## 투자자정보 확인서 (투자일임)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분류	질문 예시	비고
<b>*재산상황</b>	<b>월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b> <input type="checkbox"/> 0%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초과	적립식 투자시 고려할 항목
	<b>여유자금 보유여부</b>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0개월분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0개월분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0개월분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 초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의 가계지출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확인
	<b>* 월소득 현황(또는 연소득 현황)</b> <input type="checkbox"/> 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0만원 초과	
	<b>향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b> <input type="checkbox"/> 아주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지금과 비슷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나빠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매우 나빠질 것임	향후 투자예정기간 동안의 경제상황 또는 수입원

	<p><b>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b></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p>	
	<p><b>총 자산규모(순자산)</b></p> <p><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p> <p><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초과</p>	
	<p><b>총 금융자산대비 총 투자상품의 비중</b></p> <p><input type="checkbox"/> 0%이하 <input type="checkbox"/> 0%이하 <input type="checkbox"/> 0%이하</p> <p><input type="checkbox"/> 0%이하 <input type="checkbox"/> 0%초과</p>	<p>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항목</p>
	<p><b>*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b></p> <p><input type="checkbox"/> 0%이하 <input type="checkbox"/> 0%이하 <input type="checkbox"/> 0%이하</p> <p><input type="checkbox"/> 0%이하 <input type="checkbox"/> 0%초과</p>	
<p><b>*투자경험</b></p>	<p><b>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b> (복수선택가능)</p> <p><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ELW <input type="checkbox"/> 신용거래 <input type="checkbox"/> 외화증권</p> <p><input type="checkbox"/> 선물옵션 <input type="checkbox"/> 채권</p> <p><input type="checkbox"/> 주식형펀드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펀드</p> <p><input type="checkbox"/> 해외펀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일임 <input type="checkbox"/> 신탁</p> <p><input type="checkbox"/> 기타 [ ]</p>	<p>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정부분 설명의무 간소화 가능</p>

	<p><b>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b> (복수선택가능)</p> <p><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p> <p><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p> <p><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p> <p><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p> <p><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p>	
	<p><b>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b></p> <p><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미만</p> <p><input type="checkbox"/>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이상</p>	
	<p><b>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b></p> <p><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p>	<p>*회사참고사항 2-1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정의 참조</p>
<p><b>*투자목적</b></p>	<p><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p> <p><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p> <p><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p> <p><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해지 목적</p> <p>※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p>	<p>노후자금, 주택마련, 자녀교육, 사업자금, 여유자금 등 투자자금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p>

	<p><b>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b></p> <p><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p> <p><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p> <p><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p>	<p>수익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손실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답하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항목</p>
	<p><b>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b></p> <p><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p> <p><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초과</p>	<p>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파악</p>
<p><b>*금융지식 수준/이해도</b></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p>	
<p><b>*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투자위험감수능력)</b></p>	<p><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p>	
	<p><b>기대이익 수준</b></p> <p><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p>	

	<p><b>손실감내 수준</b></p> <p><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0% 범위</p>	
	<p>계약기간이 반 이상 남은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1~2개월 동안) 예상 손실한도를 넘어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때</p> <p><input type="checkbox"/> 포트폴리오 모두 환매</p> <p><input type="checkbox"/> 포트폴리오 일부 환매</p> <p><input type="checkbox"/> 관망</p> <p><input type="checkbox"/> 신규 투자자금 추가 불입</p>	
<p><b>*투자 예정기간</b></p>	<p><input type="checkbox"/> 0개월 미만</p> <p><input type="checkbox"/> 0개월 이상 ~ 0년 미만</p> <p><input type="checkbox"/> 0년 이상 ~ 0년 미만</p> <p><input type="checkbox"/> 0년 이상 ~ 0년 미만</p> <p><input type="checkbox"/> 0년 이상</p>	<p>현재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예정기간</p>
<p><b>가족관계</b></p>	<p><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없음</p>	
<p><b>과세형태</b></p>	<p><input type="checkbox"/> 종합과세대상</p> <p><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대상</p>	
<p><b>*연령</b></p>	<p><input type="checkbox"/> 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0세~0세</p> <p><input type="checkbox"/> 0세~0세 <input type="checkbox"/> 0세~0세</p> <p><input type="checkbox"/> 0세 이상</p>	<p>주민등록번호로 자동 확인할 수도 있음</p>
<p><b>취약투자자 여부</b></p>	<p><b>취약투자자 해당 여부</b>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투자자</li> <li>- 미성년자</li> <li>-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li> <li>-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li> </ul>	<p>취약투자자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파악</p>

---

	- 문맹자 등	
--	---------	--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중 :	하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중 :	하 :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 유무	건 수	거래 연수	거래 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OO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

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직 위)       (담당자)       (서명/인)  
(법인명)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주)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이 투자자와 장외과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직 위)       (담당자)       (서명/인)

## 〈적합성 판단 방식〉

### □ 투자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하여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

### □ 문항별 배점

○ 1번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6점

###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26점인 경우,  $26\text{점}/32\text{점} \times 100 = 81.3\text{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 80점 초과 : 1단계 공격투자형
- 60점 초과 ~ 80점 이하 : 2단계 적극투자형
- 40점 초과 ~ 60점 이하 : 3단계 위험중립형
- 20점 초과 ~ 40점 이하 : 4단계 안정추구형
- 20점 이하 : 5단계 안정형

□ 100점 만점 중 60점 이하는 투자 '부적합'

점수별 구분 적합성 판단

점수별 구분	적합성 판단
80점 초과 : 공격투자형 60점 초과 : 적극투자형	적합
60점 이하 : 위험중립형 40점 이상 : 안정추구형 20점 이상 : 안정형	부적합

※ 위 투자자유형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정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투자일임 계약 체결 가능함.

□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 유형

점수별 구분 적합성 판단

세부자산 유형	공격투자형 (초고위험)	적극투자형 (고위험)	위험중립형 (중위험)	안정추구형 (저위험)	안정형 (초저위험)
집중형	가입가능	가입불가	가입불가	가입불가	가입불가
분산형	가입가능	가입가능	가입불가	가입불가	가입불가
안정형	가입가능	가입가능	가입가능	가입가능	가입불가

## <적합성 판단 방식>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65세 이상	파생상품 등 권유 불가	- 원금손실율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율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
65세 미만	- 원금손실율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율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	

<별지 제3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채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 ~BBB-)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ELW	원금비보장형  ELW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 지침 별표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표

위험등급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 <sup>1)</sup> 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 <sup>2)</sup>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 <sup>3)</sup>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위험자산 분류사항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이상), CP(A2-등급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5) 모자구조의 자펀드인 경우 모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편입비율 및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함
- 6)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현(Fund of Funds)의 경우 주로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부여함
- 7) 펀드별 위험등급은 투자지역, 투자전략, 투자구조, 담보, 신용보강, 레버리지수준, 환위험 노출도, 신용위험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8)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lt;별지 제5호&gt;

## &lt;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거부 확인서&gt;

본인은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으로부터 본인이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이 제시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고 금융투자상품을 거래(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을 투자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이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이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이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일자 :           년       월       일

. 투자자의 성명 : \_\_\_\_\_(서명 / 인)

.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서명 : \_\_\_\_\_(서명 / 인)

<별지 제6호>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선택(거래) 확인서>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 시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투자자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투자자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설명 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은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8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자 확인사항 (자필기재)

적합(적정)성 진단결과	투자자 성향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위의 유의사항을 확인(인지)하였으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이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일자 :       년       월       일

. 투자자의 성명 : \_\_\_\_\_(서명 / 인)

.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서명 : \_\_\_\_\_(서명 / 인)





<별지 제9호>

## <계약 후 확인 절차>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했을 시 7일 이내 절차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 계약자 성명 / 법인명 \_\_\_\_\_ 상품명 \_\_\_\_\_

● 계약일자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계약 담당 임직원 성명 : \_\_\_\_\_

투자자의 신분을 확인

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의 담당 임직원과 만났음을 확인

투자권유문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음을 확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확인

투자결정 시 주요위험, 유의사항 및 수익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 했음을 확인

수수료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 했음을 확인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확인

● 확인날짜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시간 : \_\_\_\_\_ 시 \_\_\_\_\_ 분

● 확인자 성명 : \_\_\_\_\_ (서명 / 인)

● 미확인 대상 :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계약을 대리인 신분이나 가족 신분으로 계약 했을 때 1건으로 처리

기타 특이 사항

<별지 제10호>

##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투자자문·일임계약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 및 유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투자자”란 65세 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2. “초고령투자자”란 80세 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3. “조력자”란 초고령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65세 미만의 가족, 후견인 등을 말한다.
4.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가.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나.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다.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라.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마.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바.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사.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아.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자.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 차.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제3조(전담부서)

준법감시부서는 고령투자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판매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 제4조(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고위험등급 이상 상품 중 파생상품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 제5조(고령투자자 판매절차 교육)

준법감시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이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6조(불완전판매 점검)

준법감시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가.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나. 최근 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이 있는 계좌

**제7조(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초)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은 조력자의 동의를 받아 (초)고령투자자로 하여금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조력자이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제8조(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

임직원은 (초)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판매 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은 초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

## <적합성 보고서>

고객명:	고객번호:
------	-------

▣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1.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 실제 문항별 고객답변결과 기재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형	※ 회사가 분류한 투자성향의 정의
투자권유 상품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b>투자권유 사유</b>	<p>(예) 고객이 상품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연 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파생결합증권을 추천하였음</p> <p>※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를 기술</p>
<b>핵심 유의사항</b>	<p>※ 고객의 구체적 상황(재무상황,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기초자산 및 상품의 손익구조 등)이나 불이익(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p>

작성일자 : \_\_\_\_\_ 년    월    일

작성자명 : \_\_\_\_\_ (인)





